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가격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까지 완화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0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정점래)
② (주)삼영기술 (이기상)
③ (주)시티기술단 (이영호)

나. 전화번호 : ① 02-2204-9145 ② 070-7101-1540 ③ 02-2297-5570

2. 명칭 :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보결이를 부착하고 내하력을 증진하는 플레이트합성주열식 흠막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복공구간 주형보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H-BEAM에 피스브라켓과 주형지지보를 부착하였으나, C.I.P 상단 마무리를 위해 설치되는 CAP BEAM에 토압과 상부하중에 저항할 수 있게 주철근을 배근하여 Cap Girder을 형성, 주형보를 직접 거치하며 Cap Girder 전면 상단에 앵글로 보강함으로서 차량충격에 저항토록 하고, 보결이 부착을 위해 필요했던 H-Beam대신 띠철근 전면에 보결이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보결이를 부착하도록 하고 암구간의 경우 기존에는 H-Beam만을 근입하여 단면력에 저항토록 하였으나, 그 위치에 철근콘크리트를 대체하며 부족한 내하력은 전후면에 보강플레이트를 용접하여 합성함으로서 H-beam이 없는 주열식 흙막이를 형성한다

<범위>

주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캡거더 전면에 앵글을 부착하여 주형보 하중을 직접 재하하며, C.I.P전면 띠철근에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보결이를 부착하고, 암구간에서는 C.I.P 전·후면에 보강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내하력을 증진하는 플레이트합성 주열식흙막이를 형성하는 구조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무주택 실수요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 해외 단신부임 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